

제 283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
(장인홍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의원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장인홍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
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
현행 교육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법규
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
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현행 3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
청렴시민감사관을 50명 내외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각계각층
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와 직위를 보다 명확히
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
바라며 아무쪼록,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